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의 제· 개정 사항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 회의 심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시킴.

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8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대부율 연 1,000분의 25 이상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개정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다. 대부료 감액율 1000분의 70으로 일괄 적용(안 제34조)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 감액율을 대부목적에 따라 경작용 토지, 생산,연구 및 주거시설, 기타 등으로 차등 적용하였으나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라.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허용(안 제40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였으나 1989. 1.24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별첨

나.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입법예고(2008. 5. 27~2008. 6. 16)결과, 의견 제출 없음

마.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로 하고,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 타 시설물"의 확정사항</p> <p>3.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 삭 제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p> <p>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p> <p>1. ~ 2. (생 략)</p> <p>3. <u>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u> 대부하 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 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 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주거용으로</u>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 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 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 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 정하는 감액율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u></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 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 정하는 감액율은 <u>100분의 70으로 한다.</u></p> <p><삭 제></p>

<p>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p> <p>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p> <p>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p>	<p><삭 제></p> <p><삭 제></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①(생 략)</p> <p>2. ~ 3. (생 략)</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u></p> <p>5. (생 략)</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①(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9년 1월24일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u></p> <p>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4.18>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8>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8>